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. 25(월)	
		작 성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전략팀 팀장 김성수 / 전문위원 박현정 (Tel. 02-6050-3396)	문 의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팀장 최종일 / 주무관 이용현 (Tel. 031-8008-8203)
엠바고	25일(월) 14시 이후 사용		

## 반월시화 산단 폐수배출시설 획일적 규제 18년 만에 개선

- 해당기업 2,278개사, 2,599억 생산실적 증가 및 2,166명 고용창출 기대 -

□ 반월·시화 산업단지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인구과밀 해소와 공해유발업종 이전을 위해 조성된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지이다.

○ 그러나 공단 조성 후 대기·수질 등 환경문제가 악화되면서 경기도는 「반월·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(신고) 제한지침」\*을 제정·시행하여 왔다.

\* 환경관련법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, 특정수질유해물질 24종, 지정악취물질 22종 관련 업종은 원천적으로 공장 신·증설 불가 (제한시점 : 반월 '04년 이후, 시화 '97년 이후)

□ 제한지침 시행으로 공단 및 인근 지역의 환경질은 개선되었으나 환경저감장치 등 발달된 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

○ 획일적으로 입주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.

### < 기업 경쟁력 약화 사례 >

- 배출 허가증 매매 (5천만원~2억원)
- 신규 원료사용 불가로 신제품 개발이 원천적으로 제한 (D기업)
- 구리 발생량이 많은 선별기(0.055mg/ℓ) 대신 건조기(0.012mg/ℓ)로 교체하려 했으나 신규시설로 분류되어 반려 (A기업)
- 기타 행정허가 소송 등 (H사 폐수처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, '13년)

□ '14년 1월 국무총리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제한지침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접수하고 다양한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\*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완화와 환경보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.

\* 경기도, 기업인, 환경단체, 전문가 등

□ 경기도는 단기 연구용역('14년 3월)과 중장기 연구용역('15년 4월)을 추진하여 2단계(수질→대기)에 걸친 개선방안 도출 후 제한지침을 개정하였다. ('16년 1월)

### < 제한지침 개정 내용 요약 >

- (1단계)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한 완화, 폐기물·폐수 재활용업과 제조업 공존시 제조업 분야의 증설 허용 (제한지침에서 수질 삭제, '16년 1월~)
- (2단계)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분석자료 확보 후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조례제정 (제한지침 폐기, 2년 정도 소요예상)

□ 이번 규제개선은 추진단과 경기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조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기업인과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

○ 제한지침이 완화되어 반월·시화 산업단지 2,278개 사업장이 특정수질 유해물질 사용·배출이 가능하고, 이를 통해 2,599억원의 생산증가와 2,16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.

- ※ 붙임 1. 반월·시화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제한지침 개선내용 요약 1부.  
2. 반월·시화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제한지침 신규조문 대비표 1부. 끝.

**반월·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제한지침 개선 주요내용**

**□ 현행**

- (제한지침) 반월·시화산단 환경질 개선을 위해 '03.3월 제정
  - 특정 대기·수질, 지정악취물질을 사용·발생하는 신규 배출시설 허가(신고) 제한
  - 폐기물처리업, 폐수처리업의 배출시설 증설 제한 등
- (문제점) 규제로 인한 입주기업 경쟁력 약화
  - 임차율[32.1%('00) → 66.3%('14)], 평균고용인원[25.6명('01) → 16.3명('14)]
  - 허가증 매매, 임차 등 불필요 비용발생 및 환경시설 투자 저해

**□ 개선**

- (추진방향)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 완화, 다양한 관리방안을 통한 사업장 부담완화 및 환경질 개선
- 추진일정
  - 개선 (1단계, 즉시완화)
    - ▷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제한 완화
    - ▷ 폐기물·폐수 재활용업과 제조업이 공존시 제조업분야 증설허용
      - ※ 규제완화로 기존 2,300여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·배출 가능
      - ※ 기대효과 : 생산실적 2,599억원↑, 고용효과 2,166명↑
  - 개선 (2단계, 추가용역 - 2년, 10억원 예상)
    - ▷ 연구설계부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(道, 시, 시민단체, 환경단체, 기업체, 전문가, 관리기관 등)
    - ▷ 전업종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/지정악취물질 배출시설 조사
    - ▷ 연구비에 대한 공동부담 검토(道, 안산시, 시흥시, 민간 등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1. 환경관련법규에 제시된 <u>특정대기·수질유해물질, 지정악취물질</u>을 사용·발생하는 시설의 신규 배출시설 허가(신고)를 제한                      ◇ 단, 업종 변경 또는 추가시점이 제한시점 이전인 경우 제외</p> <p>2. 기존 허가(신고)를 득한후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<u>특정대기·수질유해물질, 지정악취물질</u>이 발생하는 경우 배출시설 허가(신고)를 제한                      ◇ 단, 업종 변경 또는 추가시점이 제한시점 이전인 경우 제외</p> <p>3. 폐기물처리업, 폐수처리업의 배출시설 증설을 제한함                      ◇ 단, 이미 허가(신고)된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배출시설의 대체 및 방지시설의 증설(폐수량이 증가되는 흡수·세정 등)은 제외</p> <p>4. <u>특정대기·수질유해물질, 지정악취물질</u>의 발생이 없어 신규 배출시설 신고를 필한 후 사용원료의 변경·추가로 인하여 동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</p>	<p>1. ----- 특정대기 유해물질, 지정악취물질을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◇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2.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특정대기유해물질, 지정악취물질이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◇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3 .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◇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◇ 단, 제조업과 폐기물 재활용업, 폐수 재이용업 병행 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적용</p> <p>4. 특정대기유해물질, 지정악취물질의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

